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21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2.

다. 회 부 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u>④</u> (생략)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령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3.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4.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산림청은 2024년 3월, “산림기술 진흥을 통해 새로운 산림가치 창출”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2024년~2028년) 주요 내용】

비전	산림기술 진흥을 통해 새로운 산림가치 창출
Ⅲ	
추진전략	☐ 산림사업 단계별 기술력 강화 ☐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 조성 ☐ 산림산업진흥 제도적 기반 선진화
Ⅲ	
핵심 목표(4) 및 추진 과제(17)	1. 산림사업 기술품질 향상 ① 고유 산림사업 품질의 지속적 개선 ② 산림의 핵심가치 유지·증진 기술 고도화 ③ 산림 신수요 확대에 부응한 기술력 향상 ④ 산림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 2. 산림산업 기계화 및 안전성 제고 ① 목재수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장비 개발 ② 산림작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③ 산림사업장 고위험 작업자 안전조치 강화 ④ 산림사업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안전점검 체계화 3. 산림기술인 안정적 관리 및 운영 ① 산림기술인 역량강화 및 육성 ②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 ③ 산림기술업체 경쟁력 향상 ④ 산림기술업체 경영개선 지원 ⑤ 국유림영림단 운영체계 개선 4. 산림기술 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① 산림기술법 등 법·제도의 정비 ② 현실을 반영한 산림품셈 개선체계 마련 ③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 ④ 한국산림기술인회 활성화 지원

※자료: 산림청

6.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현행법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청은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현행법 시행령 제3조제1항3)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실시하지 않았음.

즉, 산림기술진흥계획에 산림기술자,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 하에서는 산림청의 재량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함에 있어 사회적 여건 및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⁴⁾, 「도시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및 주거환경정비법」⁵⁾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

다만, 안 제3조제4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3조제5항(현행법 제3조제4항⁶⁾)에서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안 제3조제5항에 통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견수렴 절차는 통상적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24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산림기술진흥계획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1. 기술종류·등급별 산림기술자 현황('24년 11월)

(단위 : 명)

기술종류	계	기술 등급					기능 등급			
		소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소계	특급	1급	2급
합계	63,710	37,349	529	7,606	4,889	24,325	26,361	14	7,870	18,477
산림경영	47,172	20,811	198	3,381	2,504	14,728	26,361	14	7,870	18,477
산림공학	13,870	13,870	198	3,214	2,015	8,443	-	-	-	-
녹지조경	2,668	2,668	133	1,011	370	1,154	-	-	-	-

2. 연도별 산림기술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기술등급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1.
합계	-		44,590	47,452	52,220	57,491	55,520	59,919	63,710
산림 경영 기술자	계		34,487	36,595	39,717	43,279	41,402	44,530	47,172
	기술	소계	15,272	16,119	17,824	19,809	17,828	19,510	20,811
		특급	128	128	143	154	185	192	198
		1급(초급)	9,712	15,991	17,681	19,655	14,652	19,318	20,613
		2급	5,432						
	기능	소계	19,215	20,476	21,893	23,470	23,574	25,020	26,361
		특급	13	13	13	13	14	14	14
		1급	4,875	5,316	5,840	6,428	6,738	7,355	7,870
		2급	14,327	15,147	16,040	17,029	16,822	17,651	18,477
	산림 공학 기술자	계		10,103	10,423	11,385	12,698	12,123	13,066
특급		129	129	141	153	186	191	198	
1급		8,232	10,294	11,244	12,545	11,937	12,875	13,672	
2급		1,742							
녹지 조경 기술자	계			434	1,118	1,514	1,995	2,323	2,668
	특급			15	28	39	100	110	133
	고급			183	454	564	746	882	1,011
	중급			66	205	279	322	346	370
	초급			170	431	632	827	985	1,154

3. 산림사업시행업 등록 현황('24년 11월)

종류		업체수(개)	기술자격(명)
합계		3,169	16,839
산림사업법인	소계	2,867	13,610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	54	149
	숲가꾸기·병해충방제	1,304	8,962
	산림토목	364	1,806
	자연휴양림 등 조성	64	256
	도시림 등 조성	956	2,047
	숲길 조성·관리	125	390
산림조합 (시행업)	소계	164	2,222
	산림조합중앙회	21	181
	지역산림조합	143	2,041
국유림영림단	소계	138	1,007
	기능인영림단	58	403
	기계화영림단	80	604

4. 산림기술용역업 등록현황('24년 11월)

기술종류		업체수	기술자격
계		1,554	5,609
종합업		97	1,116
전문업	산림경영	609	1,822
	산림생태·공학	567	1,688
	산림휴양	39	157
	녹지조경	242	826

5. 산림기술 관련 협·단체 현황

단체명	설립근거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명)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민법 제32조	2005. 9. 5.	박주원	1,774
(사)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민법 제32조	2007. 3. 7.	김관중	106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민법 제32조	2009. 3. 20.	송동근	77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민법 제32조	2016. 7. 15.	김태현	130
(특)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법 제13조	2019. 1. 10.	진영문	39,118